

『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가. 중앙부처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등의 재해·재난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
- 나. 구미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“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”의 설치·위탁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- 가.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내용 개정(안 제3조)
- 나.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(안 제4조)
- 다.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한도 상향(안 제5조)
- 라. 특례보증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설(안 제6조)
- 마.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내용 개정(안 제8조)
- 바.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 신설(안 제10조,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~제12조, 제24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0. 12. ~ 10. 17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,
 -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한도 상향,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,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,
 - 특례보증 지원 시 낮은 신용도 등 담보 능력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